

[일련번호 : 21]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 및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 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2장 장애인등록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산 송신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에서 통보된 장애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 후 공문에 장애인 정도 결정서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15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기한보다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 재판정 통보 및 촉구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1			221231	적정	221216	230125	촉구지연 16일 (적정일자:221130.)
2			230406	230117	230307	230411	통보 지연 11일 (적정일자:230106)
3			230414	230117	230315	230425	통보 지연 (적정일자:230114)
4			230408	230117		230504	통보 지연 (적정일자:230108)
5			230613	230306	-	230714	촉구누락 (적정일자:230513)
6			240411	240201	-	240318	통보 지연 21일 (적정일자:240111)
7			240407 (통보시) 240507 (촉구시)	240129	240408	240521	통보 지연 22일 (적정일자:240107)
8			230524	230314		240530	통보 지연 18일 (적정일자:230224)
9			240717 (서류제출) 240930 (촉구)	240507	240814	240919	촉구 지연, 재판정 기한이 통보, 촉구 시 달라짐
10			240916 (서류제출)	240814		241015	통보 지연 (적정일자:230224)
11			241001 (서류제출) 241025 (촉구)	240814	241007	241121	통보 지연 44일 (적정일자:240701), 촉구 지연 (적정일자:240925), 재판정 기한이 통보, 촉구 시 달라짐
12			241112	240920		241211	통보 지연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서류제출)				(적정일자:240912)
13			240701 (서류제출) 240830 (촉구)	240503	240814		통보 지연 (적정일자:240401), 촉구 지연 (적정일자:240730) 재판정 기한이 통보, 촉구 시 달라짐
14			240807 (서류제출) 240930 (촉구)	240529	240814		촉구 지연, 재판정 기한이 통보, 촉구 시 달라짐
15			241212 (서류제출)	241021			통보 지연 (적정일자:241012)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